

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종무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340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월 28일

발 의 자 : 김종무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임만균, 정재웅, 이경선, 고병국,
신정호, 김재형, 송명화, 김제리,
송도호, 송재혁, 김화숙, 전석기,
이은주, 경만선 의원(14명)

1. 제안이유

- 지하철역 개통, 재개발·재건축 단지 입주 등 교통수요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마을버스 노선연장·변경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
-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버스 운영이 가능해져 일반버스 운행이 어려운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철도 및 일반노선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자가용 이용 억제 및 교통체증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

2. 주요골자

- 구청장에게 위임한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중 노선의 신설·폐지, 연장·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 단서조항을 삭제함 (안 별표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별첨

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제1호의 “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(노선의 신설·폐지, 연장·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)”를 “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”로 하고,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마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노선의 신설·폐지, 연장·단축 및 조정

별표 중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제5호의 “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과(마을버스 노선연장·변경에 관한 사무는 제외)”를 “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	
주관부서	사 무 명	주관부서	사 무 명
버스정책과	<p>1. <u>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(노선의 신설·폐지, 연장·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)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<신 설>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가.~라.</u> (생 략)</p> <p>2.~4. (생 략)</p> <p>5. <u>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과(마을버스 노선연장·변경에 관한 사무는 제외) 사업개선 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</u></p> <p>6.~16. (생 략)</p>	버스정책과	<p>1. <u>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가. 노선의 신설·폐지, 연장·단축 및 조정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나.~마.</u> (현행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음)</p> <p>2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과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6.~16. (현행과 같음)</p>